경품류의 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1988년 11월 30일 사무국장 통달 제9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경품류의 가액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따라야 한다.

더불어 “경품류의 가액 산정기준 및 상점가에서의 공동 현상에 대해서(1973년 12월 19일 공취감 제773호 사무국장 통달)”는 폐지한다.

경품류의 가액 산정기준

1 경품류의 가액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

(1) 경품류와 동일한 것이 시판되고 있는 경우에는 경품류를 제공받는 자가 그것을 통상 구입할 때의 가격에 따른다.

(2) 경품류와 동일한 것이 시판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경품류를 제공하는 자가 그것을 입수한 가격, 유사품의 시가 등을 감안하여, 경품류를 제공받는 자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입하기로 했을 때 가격을 계산하고 그 가격에 따른다.

2 해외여행 초대 또는 우대를 경품류로 제공하는 경우의 가액 산정도 1에 따르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따른다.

(1) 그 여행이 미리 여행지, 일수, 숙박시설, 관광서비스 등을 일정하여 여행업자가 팜플렛, 전단지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하, “세트 여행”이라고 한다)인 경우 또는 그 여행이 세트 여행은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의 세트 여행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세트 여행의 가격에 따른다.

(2) 그 여행이 세트 여행이 아니고, 그 여행과 동일한 내용의 세트 여행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여행을 제공하는 자가 그것을 입수한 가격, 유사 내용의 세트 여행 가격 등을 감안하여, 경품류를 제공받는 자가 그것을 통상 구입하기로 했을 때의 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에 따른다.